

에듀테크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관계법규2

- ☆ 3시간 50분 완성, PDF 전자책
- ☆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도서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관계법규2

ISBN : 979-11-7393-046-1

발간일 : 2025-07-28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6,000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관계법규2

[목차]

제1권 감염병예방법(p3)

제2권 국민건강보험법(p75)

제3권 암관리법(p168~191)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제1권 감염병예방법

(이하 법, 2025년 10월 2일 시행)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p13)

제3장 신고 및 보고(p17)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p19)

제5장 고위험병원체(p24)

제6장 예방접종(p29)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p35)

제8장 예방 조치(p48)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p55)

제10장 경비(p60)

제11장 보칙(p67)

제12장 벌칙(p71)

[약어]

보건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부령은 보건복지부령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군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군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의사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청장등은 청장, 시도지사, 시군구

장관등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시도지사등은 시도지사, 시군구

통합시스템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중앙기관장은 (관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염병정보시스템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관리기관은 감염병관리기관

관리시설은 감염병관리시설

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 건강 증진/유지

2. 정의

가. 감염병

- 1급/2급/3급/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1) 제1급감염병(이하 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 제2급감염병(이하 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유행시 24시간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E형간염

3) 제3급감염병(이하 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유행시 24시간내 신고해야 하는 다음 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 치쿤구니아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비고) 1~3급은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청장이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4) 제4급감염병(이하 4급)

- 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감염병
- 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자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5) 기타 감염병

- 다음 중 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a) 기생충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

b)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c)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

d)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해 전파

e)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사람 간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

f)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
- 감시활동 필요

나. 감염병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자

다. 감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

라.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 보유

마. 감염병의심자(이하 의심자)

- 1)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자(이하 접촉자)
- 2) 검역관리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또는 그 지역 경유자로서 감염 우려
- 3)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 우려

바. 감시

- 감염병 발생 자료, 감염병병원체/매개체 자료를 체계적, 지속적 수집, 분석
-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자에 배포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사용하게 하는 일체의 과정

사. 표본감시

- 감염병환자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발생에 대해,

- 감시기관을 지정해 정기적, 지속적 의과학적 감시

아. 역학조사

- 감염병환자등 발생시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감염병환자등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등 활동과,
-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 있는 사례 발생시 원인 규명 활동

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으로서,
-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 있는 것

차. 고위험병원체

-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시,
-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 초래할 감염병병원체

카.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 기존 감염병 변이/변종 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 청장이 장관과 협의해 지정

타. 의료/방역 물품

-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방역 물품/장비로서 청장이 지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법 따름

4. 국가등의 책무

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 존엄과 가치 존중, 기본적 권리 보호, 법률에 따르지 않고 취업 제한 등 불이익 금지

나) 다음 사업 수행

- 예방/방역대책
- 감염병환자등 진료/보호
- 예방접종계획 수립/시행
- 교육/홍보
- 정보 수집/분석/제공
- 조사/연구
-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 위한 혈액, 체액,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 검사, 보존, 관리, 약제내성 감시
-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보호
- 관리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
- 의료/방역 물품 비축
- 예방/관리사업 평가
-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예방대책 수립
- 한센병 예방/진료 법인/단체 지원

- 예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계획 준비, 교육/훈련
-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지정
-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지침(매뉴얼 포함) 고시

다) 국가등(교육감 포함)은 질병 정보, 발생, 전파 상황 공유, 상호 협력

라)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간호사중앙회와 정보 공유

5.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 의료인, 의료기관 장 등은

가) 감염병 환자 진료 정보 제공받을 권리

-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인한 피해 보상받음

나) 감염병 환자 진단/관리/치료에 최선

- 장관, 청장, 지자체장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

다) 국가등의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6.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격리/치료 등 받은 때 피해 보상받음

나) 발생 상황, 예방/관리 정보와 대응방법 알 권리

- 국가등은 신속하게 정보 공개

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받을 권리

- 국가등은 소요 비용 부담

라) 치료/격리 등 국가등의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7~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가. **청장**은 장관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

(내용)

- 기본목표/추진방향
- 사업계획/추진방법
- 의료/방역 물품 비축/관리
- 전문인력 양성
- 의료기관 종별 위기대응역량 강화
- 감염병 통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 관리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등

나.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 **청장**등은 행정기관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자료 요청

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청장/시도지사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시행과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둘 수 있다

- 국가등은 예산 지원 가능

3. 감염병병원

가. 국가는

- 1)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교육, 환자 진료/치료 시설, 인력, 연구능력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
- 2) 감염병환자 진료/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36병상**(음압병상, 격리병상 포함) 이상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권역별 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
 -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 설정
- 3) 예산내 중앙병원, 권역별 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 예산 지원 가능
- 4) 업무 자문 등을 위해 중앙병원에 감염병임상위 설치 가능

나. 장관은

- 중앙병원과 권역별 병원의 효율적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감염병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

4. 내성균 관리대책

- 가) 장관은 감염병관리위 심의 거쳐 5년마다 수립/추진

나) 내용

- 정책목표/방향
-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 감시체계 강화 등

다) 업무 협조

- 장관은
- 공무원/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요청
- 중앙기관장에 정책목표/방향 관련 자료, 의견 요청

5. 긴급상황실

- 청장은 상시 설치/운영
- 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유행하는 긴급시 초동조치 및 지휘

6. 청장의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가) 조사/연구

- 연구개발 기획,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사업 추진
- 예산범위내 연구개발사업하는 기관에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 가능
- 전문기관 지정/해제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준용

나) 연구기관/대학/기업 의뢰 받아 치료제/백신 개발 시험/분석 가능

- 의뢰자는 수수료 납부

7.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설치

- 질병관리청에 둠
- 감염병 예방/관리 주요 시책 심의